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23

# 대 구 지 방 법 원

## 제 1 행 정 부

## 판 결

| | |
|---|---|
| 사 건 | 2022구합102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 |
| 피 고 | ◯◯군수 |
| 변 론 종 결 | 2023. 5. 24. |
| 판 결 선 고 | 2023. 6. 21. |

## 주 문

1. 피고가 2021. 9. 9. 원고에게 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6,026,4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 이 유

1)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피고가 2021.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만 기재하였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2021. 9. 9. 원고에게 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6,026,450원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23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2. 29. 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본금 300,000,000원을 출자하여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B의 대표이사로서 B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 30,000주의 80%인 24,000주를 보유하였고, 2003. 10. 2.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 19,000주 중 80%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총 39,200주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2004. 10. 25. C와 D에게 일부 주식을 양도하여 총 발행주식의 49%인 24,010주를 보유하였다가, 2020. 12. 31.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 B의 주식 및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주주 | 2000. 12. 29. | | 2003. 12. 31. | | 2004. 12. 31. | | 2020. 12. 31. | |
|---|---|---|---|---|---|---|---|---|
| | 주식 | 비율 | 주식 | 비율 | 주식 | 비율 | 주식 | 비율 |
| A | 24,000 | 80.0 | 39,200 | 80.0 | 24,010 | 49.0 | 49,000 | 100.0 |
| C | 2,000 | 6.67 | 3,267 | 6.67 | 22,540 | 46.0 | | |
| E | 2,000 | 6.67 | 3,267 | 6.67 | | | | |
| F | 2,000 | 6.66 | 3,266 | 6.66 | | | | |
| D | | | | | 2,450 | 5.0 | | |
| 합계 | 30,000 | 100.0 | 49,000 | 100.0 | 49,000 | 100.0 | 49,000 | 100.0 |

다. 피고는 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20년 귀속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100% 주식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다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비율보다 20% 증가되었음에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 7. 29. 원고에게 취득세 14,796,440원(=본세 11,856,140원+무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 2,940,300원), 농어촌특별세 1,233,260원(=본세 1,176,780원+납부지연가산세 56,480원) 합계 16,029,700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21. 8. 19. ○○○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도지사는 2021. 9. 2. 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23

마. 이에 피고는 2021. 9. 9. 원고에게 과점주주 주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합계 16,026,4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도지사에게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다음 2022. 5.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2. 8.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 1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는 원고 1인이 소유한 회사이고, 원고는 B 설립 당시부터 C 등에게 B의 주식 일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C가 사망한 후 명의신탁한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부과대상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2020. 12. 31. B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전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23

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3. 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은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 중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23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 내지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B의 운영을 지배하는 실제 주주로서 B 설립 당시부터 C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20. 12. 31.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 명의를 회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C 등 명의로 있던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부과대상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C 등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B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B의 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은 30,000주, 주식 1주의 값은 10,000원이었으므로, 출자금은 300,000,000원이었다. 원고의 ○○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2000. 12. 28. G로부터 3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2000. 12. 29. 위 300,0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원고의 ○○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000. 12. 30. 3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300,000,000원이 인출된 거래내역에 비추어 볼 때, B 설립 당시 G로부터 돈을 빌려 출자금 300,000,000원 전액을 부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을 만하다. 반면에 설립 당시 주주로 이름을 올렸던 C, E, H가 B 설립과정에서 주식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② 원고는 B 설립 당시인 2000. 12. 29.부터 현재까지 B의 대표이사 및 이사 직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23

함을 유지하여 왔다.

③ B는 2017. 11. 30. 원고에게 623,260,000원, C에게 90,160,000원의 배당금 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당시 주식 보유 비율 원고 49%, C 46%, D 5%에 따른 것이 아니다. C는 2017. 12. 13. 위 배당금 결정에 따라 B로부터 배당금 76,275,360원을 지급받았으나, 2017. 12. 22. 원고에게 75,000,000원을 송금하여 결국 위 배당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④ ○○세무서장은 C가 2018. 7. 6. 사망함에 따라 C가 소유하고 있던 B의 주식이 C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다. 원고는 ○○세무서장에게 C가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B 주식 22,540주에 대해 자신이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명의신탁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세무서장은 원고의 명의신탁사유서, B의 2017년도 배당금의 흐름, 출자금 납입 주체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원고가 C 명의를 차용하여 위 B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⑤ 그 후 ○○세무서장은 B가 C에게 배당하였던 2017년도 배당금이 실제로는 원고의 배당소득이라고 보아 원고에게 2017년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할 것을 권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후 2020. 6. 1. 종합소득세 23,940,74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23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23

별지

##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3. 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23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끝.